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김중호  
전화 031-5182-4290 / 팩스 031-5182-4555

**보도자료**  
**2024. 4. 22.(월)**

## 신상공개법 제정으로 검찰에서 최초 피의자 신상공개 - 여대생 살해 대학생 구속 기소 -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제9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4항 제3호의 범위 내)
-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제12조 제1항 제1호)

- 수원지방검찰청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와 그녀의 모친 피해자 C에게 흉기를 휘둘러 B를 살해하고, C에게 중상을 입게 한 피고인 김레아를 살인 및 살인미수로 지난 4. 15.(월) 구속 기소하였음
- 수사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강한 집착과 소유욕을 드러내며 B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고, 이후 피해자 모녀가 함께 찾아와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됨
- 한편 검찰은 모친 앞에서 딸을 흉기로 살해한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유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24. 4. 5. '신상정보공개 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22. 신상정보 (얼굴·성명·나이)를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음
- 피고인은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24. 4. 18. 법원에서 기각 결정됨에 따라 오늘(4. 22.) 신상정보 공개
-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등의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 1

## 사건관계인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 김레아(남, 26세, 대학생)
- 피해자
  - B(여, 21세), 사망
  - C(여, 46세, B의 모친), 중상(최소 전치 10주의 폐열상 등)
- 공소사실 요지
  - '24. 3. 25. 09:35경 화성시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그간의 폭력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과도로 B를 찢러 살해하고, 함께 찾아온 피해자 C를 과도로 살해하려 하였으나 중상을 가하는데 그침 [살인, 살인미수]

# 2

## 수사 및 신상정보 공개 경과

- '24. 3. 25. 경찰, 김레아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피해자 C의 112신고)
- '24. 3. 27. 경찰, 구속 송치
- '24. 4. 5. 검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심의결과 : 공개) 및 김레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결정
- '24. 4. 9. 김레아,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 ※ 법원은 '24. 4. 19.까지 신상정보 공개처분 효력 정지
- ~ '24. 4. 14. 검찰, 보완수사

▶ 김레아, C, 참고인(망 B의 친구) 조사, 압수한 휴대폰,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 분석 등

- '24. 4. 15. 검찰, 구속 기소
- '24. 4. 18.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 '24. 4. 22. 검찰, 신상정보 공개

### 3

## 수사 결과

### 1 범행동기 및 경위 규명

- 피고인과 B는 같은 대학을 다니던 중 교제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B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며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 'B와 이별하게 되면 B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라는 말을 하는 등 B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또한 B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B의 팔을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의 폭력 성향도 보여왔음
- B는 혼자 힘으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모친인 C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폭력 성향 등을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B가 결별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흥기로 B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C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음

### 2 신상정보 공개

#### 가. 공개 요건

- '24. 1. 25.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라 함)에 따르면, 검사, 사법경찰관은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 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②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③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있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 제1항),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의결 결과 등을 고려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음

< 중대범죄신상공개법 관련 규정 >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 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 검찰은 ① 모친인 C 앞에서 B가 흉기로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②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③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④ 피해자 측의 김레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감안,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하였음
- 수원지방법검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4. 4. 5.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내부위원 1명이 참여하여 심의를 진행한 후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하였고, 검찰은 같은 날 김레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였음

## 다.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김레아의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김레아는 '24. 4. 9.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 법원(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수원지법 2024아3406)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라는 이유로 '24. 4. 18. 김레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음
- 한편, 김레아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될 예정으로, 검찰은 취소 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음

## 라. 신상정보 공개 방법

- 김레아의 신상정보(얼굴·성명·나이)는 '24. 4. 22.(월) 10:00 수원지방법 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suwon](http://www.spo.go.kr/suwon)) '고시·공고'란에 공개되었고, '24. 5. 21.(화)까지 30일 동안 게시될 예정임

※ '24. 1. 25.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례에 해당

< 중대범죄신상공개법 관련 규정 >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 ⑧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한다.

### ③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

- 검찰은 C를 비롯한 B의 유족들, 피해자인 C에게 장례비·치료비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의뢰하였으며, 심리치료 등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앞으로 진행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를 적극 보장할 예정임

## 4

### 향후 계획

-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의 보호·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음 